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7.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강동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 청사로는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중앙로에 위치하여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3차레의 증축으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10만 인구 시대에 대비 새로운 지역 발전 위하여 현 청사를 처분하고 신청사를 신축 이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 】

□ 인동동청사 신축

- 토 지 : 5필지 45,133m²
- 건 물 : 2,148m²(지하 1층 지상 3층)
- 예정가격 : 7,542,005천원(가감평가 기준)

【 처분재산 】

□ 현인동동청사 처분

- 토 지 : 2필지 1,078.96m²
- 건 물 : 766.11m²
- 예정가격 : 6,548,590천원(가감평가 기준)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제11조, 제12조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illegible]

2008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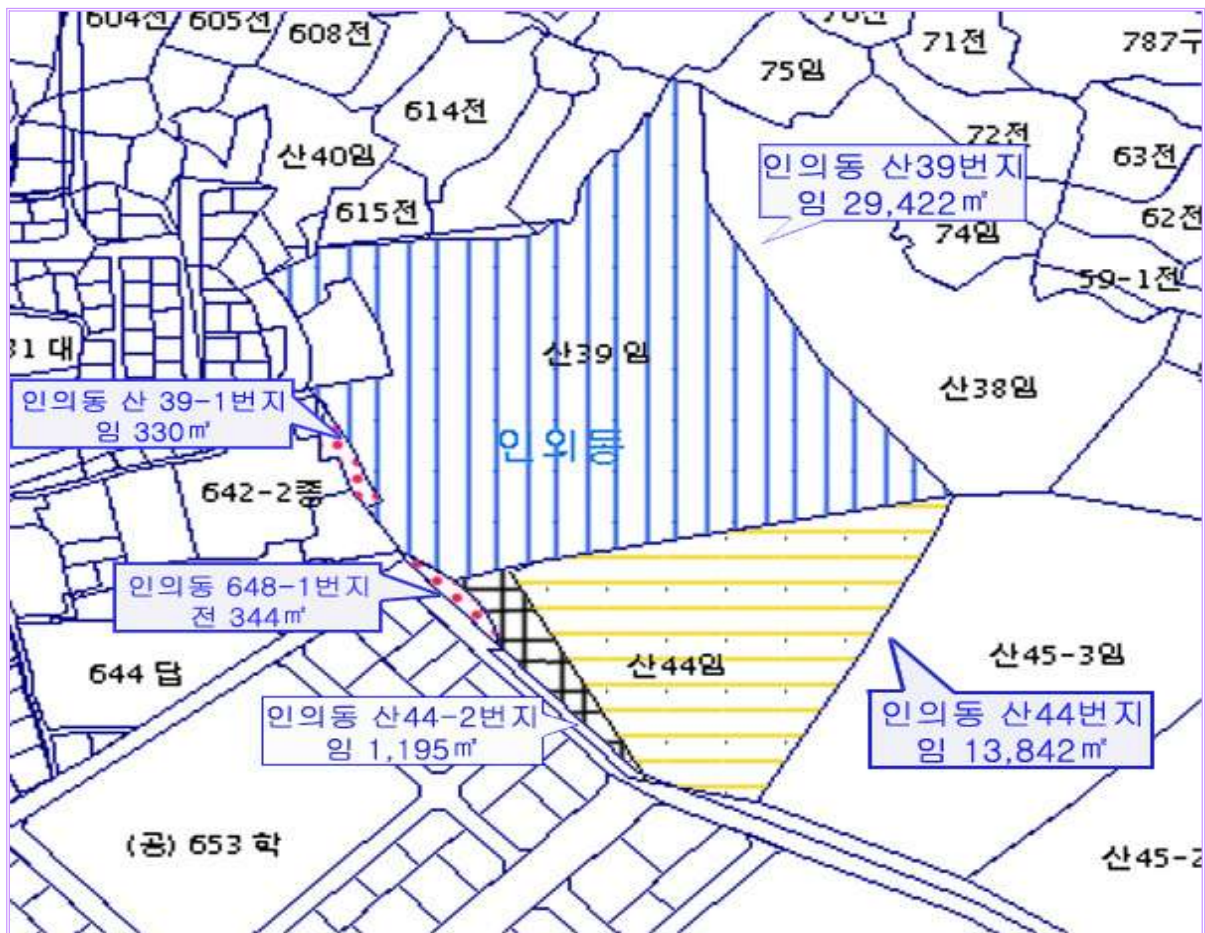
취득대상토지

□ 재산의 표시 : 인동동 청사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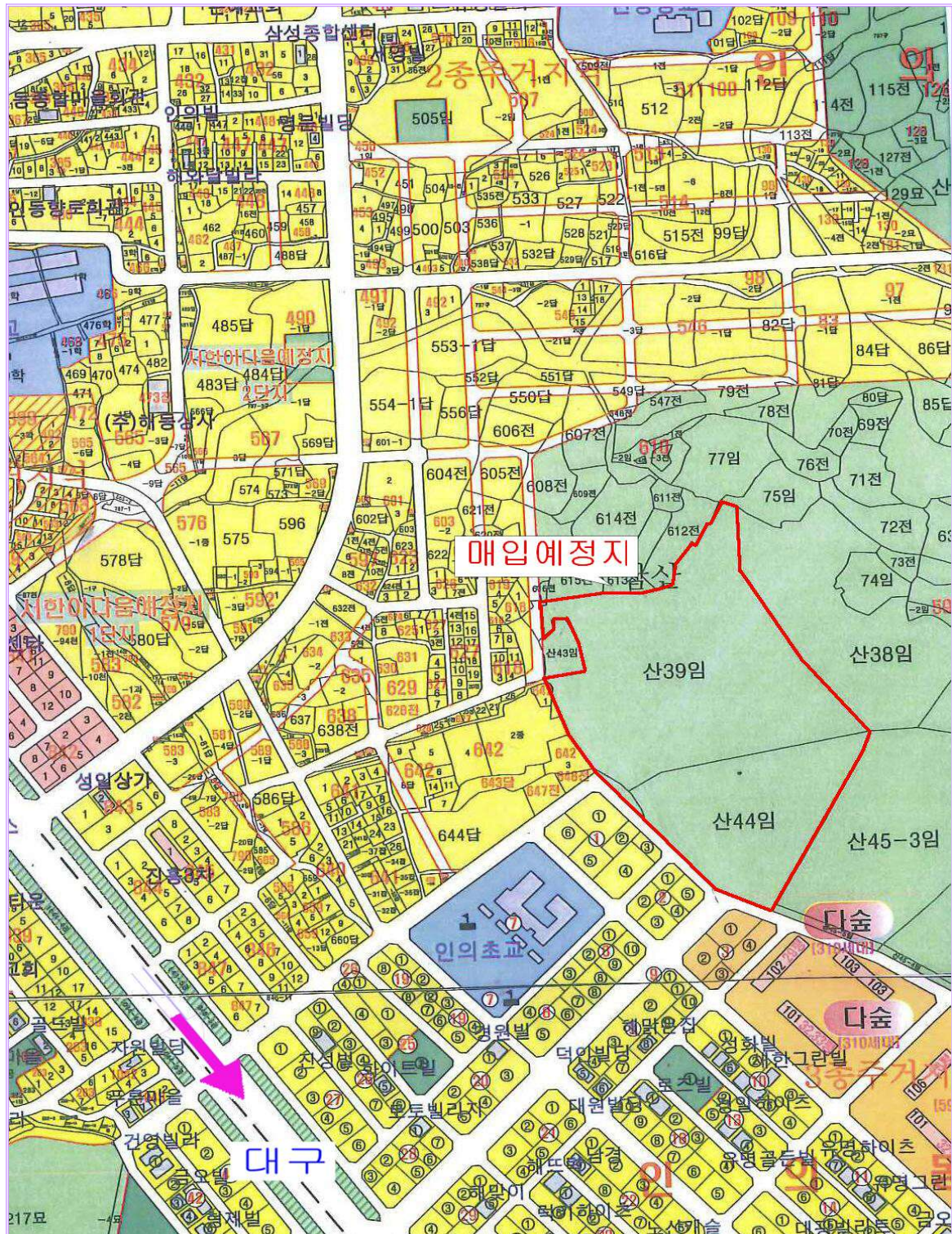
○ 소재지 : 구미시 인의동 산 39번지의 4필지

○ 지목 및 면적 : 임야, 전(45,133㎡)

□ 지적도



□ 위치도



□ 현황전경도



처 분 대 상 토 지

□ 재산의 표시 : 현인동동청사

○ 소재지 : 구미시 황상동 633-16번지의 1필지

○ 지목 및 면적 : 대지(1,078.96㎡)

□ 지적도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 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